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4. 12 선고 2021가합1446 판결 [임차보증금반환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3. 15.

판 결 선 고 2022. 4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4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 판사 이영풍, 판사 정종건, 판사 이학인

별지

청 구 원 인

원고는 2019. 3. 25.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204,000,000원, 임대차기간 2019. 3. 25.부터 2021. 3. 25.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.

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인 2021. 1. 15. 원고에게 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.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고,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21. 3. 25.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그러나 피고는 돈이 없다면서 주택 매매가 이루어져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4,000,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. 끝.

1) 원고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다가 현재 임차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하였다.